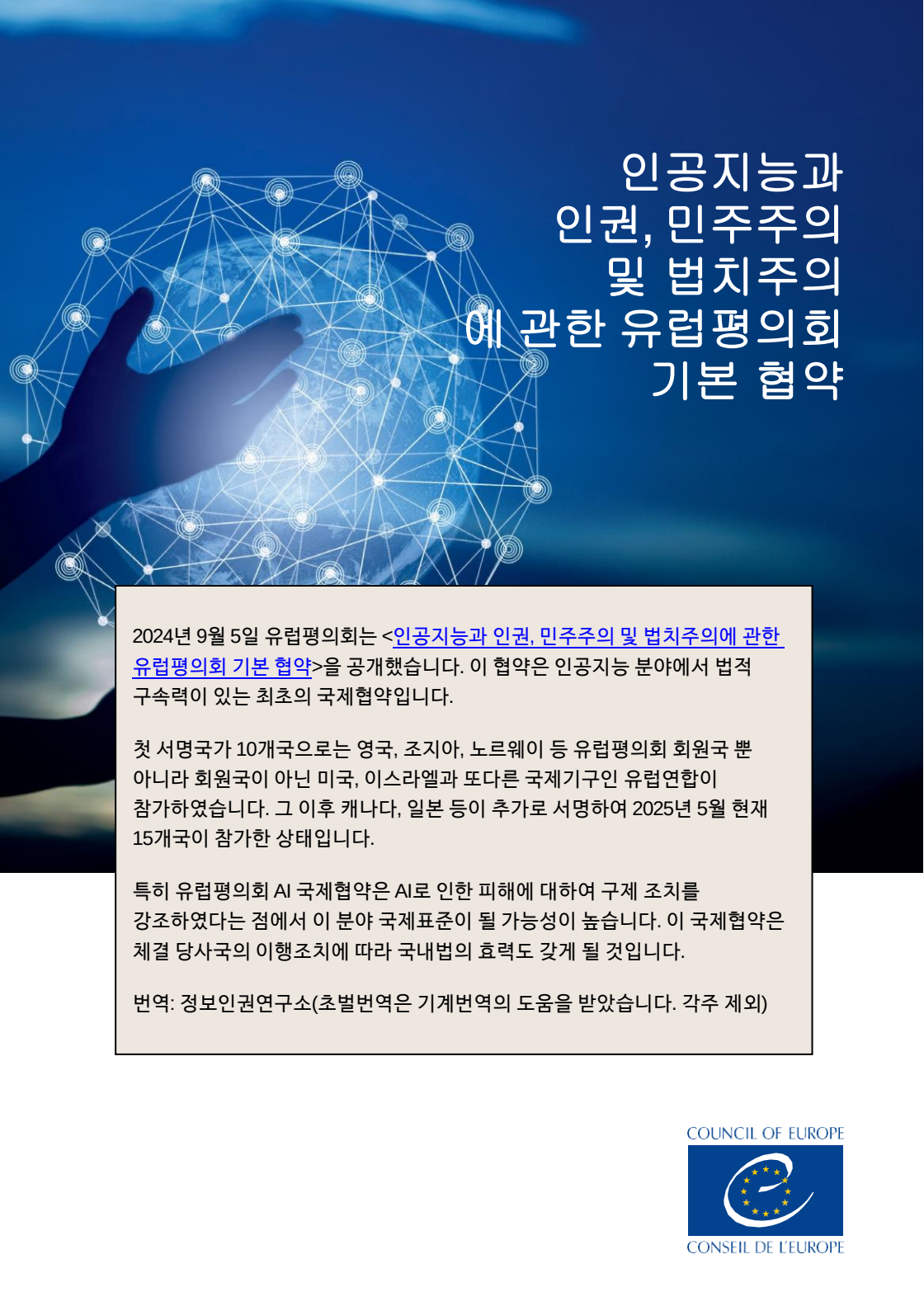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2024년 9월 5일 유럽평의회는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첫 서명국가 10개국으로는 영국, 조지아, 노르웨이 등 유럽평의회 회원국 뿐 아니라 회원국이 아닌 미국, 이스라엘과 또다른 국제기구인 유럽연합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 일본 등이 추가로 서명하여 2025년 5월 현재 15개국이 참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은 AI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제협약은 체결 당사국의 이행조치에 따라 국내법의 효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번역: 정보인권연구소(초벌번역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각주 제외)

COUNCIL OF EUROPE



CONSEIL DE L'EUROPE



이 기본 협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은 이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과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본 협약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기존의 국제 표준을 보완하고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협약은 시간의 흐름을 버틸수 있도록 기술 자체를 규제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기술 중립적입니다.

이 기본 협약은 어떻게 성안되었나요?

— 2019년 인공지능 임시위원회(CAHAI)가 이러한 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임무를 이어받아 2022년에 후임을 맡은 인공지능위원회(CAI)가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46개 회원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캐나다, 일본, 멕시코, 교황청, 미국, 유럽연합 등 모든 참관국(옵서버)이 참여하였고, 호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페루, 우루과이 등 비회원국 상당수도 참여했습니다.

— 유럽평의회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관행에 따라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및 기타 여러 국제기구에서 68명의 국제적 대표들이 기본 협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기본 협약에 따라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본 원칙

- AI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활동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 ▶ 평등 및 차별 금지
 -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 투명성 및 감독
 - ▶ 책무성과 책임성
 - ▶ 신뢰성
 - ▶ 안전한 혁신

구제 수단, 절차적 권리 및 보호 장치

- ▶ AI 시스템과 그 사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이 정보는 시스템 사용을 통해 또는 실질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관련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스템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 ▶ 관할 당국에 효과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용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절차 보장, 안전장치 및 권리를 규정합니다.
- ▶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위험 및 영향 관리 요구 사항

- ▶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과 관련하여 위험 평가 및 영향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 ▶ 이러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충분한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수립합니다.
- ▶ 당국이 특정 AI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 금지 또는 유예 조치('레드라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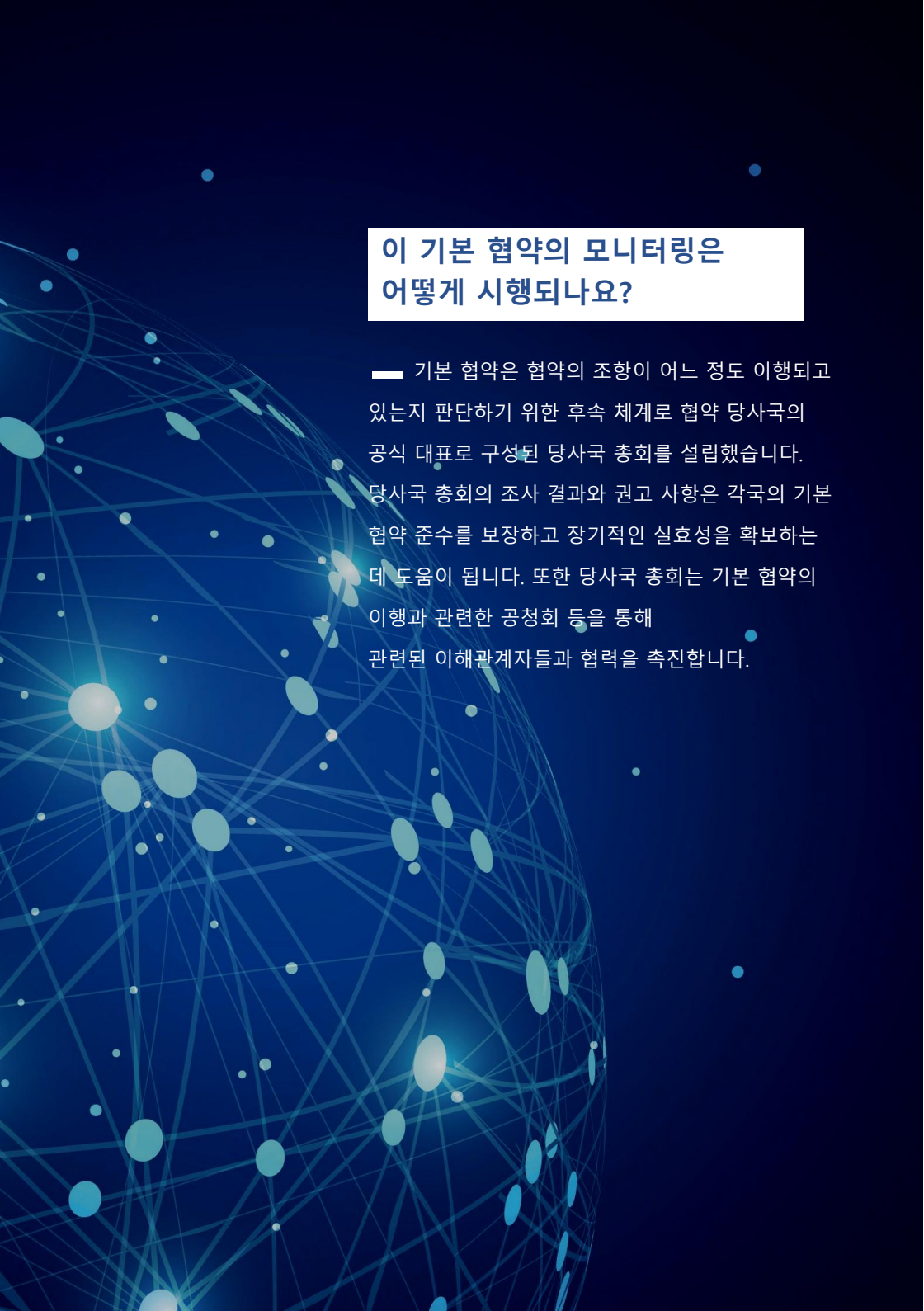


이 기본 협약의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 기본 협약은 공공 기관(공공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행위자 포함)과 민간 행위자의 AI 시스템 사용을 다룹니다.

■ 이 협약은 당사국에 민간 부문 규제시 협약의 원칙과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당사국은 관련 협약 조항에 대한 의무를 직접 질 수도 있고, 대안적으로는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완전히 존중하면서 조약 조항을 준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가안전보장 이익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이 조약의 조항을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과 민주적 제도 및 절차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 협약은 AI 시스템의 테스트가 인권, 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를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 문제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본 협약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 기본 협약은 협약의 조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후속 체계로 협약 당사국의 공식 대표로 구성된 당사국 총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사국 총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각국의 기본 협약 준수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사국 총회는 기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www.coe.int/AI



유럽평의회 디지털 거버넌스

Premis 086024

ENG

www.coe.int

유럽평의회는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인권 기구입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약인 유럽인권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회원국의 유럽 인권 협약
이행을 감독합니다.

COUNCIL OF EUROPE



CONSEIL DE L'EUROPE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빌뉴스, 5.IX.2024

서문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기타 본 협정 서명국은,

유럽평의회의 목표가 특히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에 더 큰 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협약 당사국 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에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는 일이 가치 있음을 인정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이루어지는 작동을 통해 도래할 심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고, 이는 진보와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안녕 및 인류의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 성 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여타의 중대한 목표와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이루어지는 작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함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이루어지는 특정 작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별,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차별의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고, 또한 인권의 향유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여성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완전하고 평등하며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평등을 창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용을 우려하고, 사생활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감시 및 검열 관행을 비롯하여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억압적인 목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을 규율하는 공통의 일반 원칙과 규칙을 명시하는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공유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러한 가치를 책임 있는 혁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증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이점을 활용해야 함을 확신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 개발, 사용, 폐기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식, 신뢰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본 협약의 프레임워크 성격을 인정하는 바,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단으로 보완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 고용 노동과 같은 사회 경제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이상으로 더 광범위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여타의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기구 및 포럼에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 온 관련 노력에 주목하며,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1950년 유럽인권협약(ETS 제5호),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1년 유럽 사회 헌장(ETS 제35호) 및 각 규약, 1996년 개정 유럽 사회 헌장 (ETS 제163호) 등 해당 국제 인권 조약을 염두에 두고,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염두에 두며,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 보호를 위한 1981년 협약(ETS 제108호) 및 그 의정서 등에서 적용되고 부여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또한 유의하고,

본 협약을 통하여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진하려는 당사국들의 노력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1장 - 일반 조항

제1조 - 대상 및 목적

- 1 본 협약의 조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되는 기술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정한 조치 또는 수평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본 협약은 당사국의 효과적인 조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본 협약의 목적상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표를 위해, 수신된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마다 배포 후 자율성 및 적응성 수준이 다릅니다.

제3조 - 범위

- 1 본 협약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을 포괄합니다.
 - a 각 당사국은 공공 기관 또는 이를 대리하는 민간 행위자가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에 본 협약을 적용합니다.
 - b 각 당사국은 전 호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민간 행위자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영향에 대하여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각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에 대한 문서를 기탁할 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에서, 민간 행위자의 활동에 본 협약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명시된 원칙과 의무를 적용하거나 또는 이 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명시합니다. 당사국은 언제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신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국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국제적 의무의 적용을 경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2 당사국은 자국 국가안전보장 이익보호와 관련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에 있어서, 그러한 작동이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해당 국제법에 부합하고 민주적 제도 및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한, 본 협약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3 제13조 및 제25조 제2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만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국방과 관련된 사항은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장 - 일반 의무

제4조 - 인권 보호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이 해당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된 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제5조 - 민주적 절차의 위상 및 법치주의 존중

- 1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권력 분립의 원칙, 사법 독립성 존중 및 사법 접근성을 비롯하여 민주적 제도 및 절차의 위상, 독립성 및 효과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 2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의 맥락에서 공공 토론에 대한 개인의 공정한 접근과 참여는 물론, 자유로운 의견 형성 능력 등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제3장 -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과 관련된 원칙

제6조 - 일반적인 접근 방식

이 장에서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체계 및 본 협약의 다른 의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공통 원칙을 제시합니다.

제7조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제8조 - 투명성 및 감독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식별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과 관련된 특정 상황 및 위험에 맞추어진 투명성 및 감독 요건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제9조 - 책무성과 책임성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책무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제10조 - 평등 및 차별 금지

- 1 각 당사국은 해당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이 젠더 평등을 비롯한 평등 및 차별 금지를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 2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과 관련하여 해당 국내적·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1조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 a 해당 국내적·국제적 법률, 표준 및 프레임워크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및 개인정보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b 해당 국내적·국제적 법적 의무에 따라 개인을 위한 효과적 보호수단 및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제12조 - 신뢰성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과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적절한 품질 및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 안전한 혁신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찰 당국의 감독 하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실험 및 테스트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적절히 구축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4장 - 구제 수단**제14조 - 구제 수단**

- 1 각 당사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구제 수단이 요구되고 국내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 2 위 1항을 지원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 a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그와 연관된 사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공하고, 적절하고 해당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조치
 - b 전 a호에 언급된 정보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시스템 사용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관련 있고 적절한 경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조치
 - c 관련된 사람이 관찰 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제15조 - 절차적 안전장치

- 1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권의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효과적인 절차적 보장, 안전장치 및 권리를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2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람 아닌 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 위험 및 부정적 영향의 평가 및 완화

제16조 - 위험 및 영향 관리 프레임워크

- 1 각 당사국은 제3장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하여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이 야기하는 위험을 식별, 평가,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합니다.
- 2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 a 특히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맥락과 사용 의도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 b 잠재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 c 적절한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그 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 d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용합니다.
 - e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 f 위험,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 위험 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문서화를 포함합니다.
 - g 적절한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기 전과 상당히 수정되었을 때 테스트하도록 요구합니다.
- 3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문서화하여 제2항에 설명된 관련 위험 관리 조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 4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정 사용이 인권 존중, 민주주의의 기능 또는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예 및 금지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제6장 - 협약의 이행

제17조 - 차별 금지

본 협약 조항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은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18조 -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

각 당사국은 국내법 및 해당 국제적 의무에 따라 장애인 및 아동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특정 요구 사항 및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19조 - 공공 협의

각 당사국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윤리적, 환경적 및 기타 관련 영향 측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공공 토론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적절히 고려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0조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각 당사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의 식별, 평가, 예방 및 완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전문 기술을 비롯하여 인구의 모든 집단에 적절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역량을 장려하고 촉진합니다.

제21조 - 기존 인권에 대한 안전장치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의 관련 법률 또는 당사국이 가입한 기타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보장될 수 있는 인권, 기타 관련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제한, 경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 더 광범위한 보호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이 본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7장 - 후속 조치 메커니즘 및 협력**제23조 - 당사국 총회**

- 1 당사국 총회는 본 협약의 당사국 대표로 구성됩니다.
- 2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합니다.
 - a 제34조 1항 또는 본 협약 하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의 효과 및 여타의 문제 식별을 비롯하여 본 협약의 효과적인 적용 및 이행을 촉진합니다.
 - b 본 협약의 보완 또는 개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c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 d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25조에 정의된 목표의 추구를 비롯하여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법적, 정책적 또는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합니다.
 - e 필요한 경우, 본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합니다.

f 적절한 경우 공청회를 비롯하여 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측면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 3 당사국 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당사국 또는 각료위원회 과반수가 소집을 요청하는 모든 경우에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소집합니다.
- 4 본 협약의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하여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합니다.
- 5 당사국들은 본 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유럽평의회 사무처의 지원을 받습니다.
- 6 당사국 총회는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적절한 방안을 각료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 7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모든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의 활동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의 분담금은 각료위원회와 해당 비회원국이 공동으로 정합니다.
- 8 당사국 총회는 유럽평의회 규약(ETS 제1호) 제8조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 지위를 상실한 당사국이 규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그 당사국의 업무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에 대해서도 각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정 제3조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 보고 의무

- 1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된 후 최초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제3조 1항 a호 및 b호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의 세부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합니다.
- 2 당사국 총회는 절차 규칙에 따라 보고서의 형식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제25조 - 국제 협력

- 1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당사국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본 협약의 조건에 일치되게 행동하고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적절한 경우 지원합니다.
- 2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연구 맥락에서 그리고 민간 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험 및 영향을 포함하여, 인권의 향유, 민주주의의 기능 및 법치주의 준수에 중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측면에 관하여 관련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당사국이 이러한 정보 교환에 관련 이해관계자 및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참여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 3 당사국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내 작동의 맥락에서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과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26조 - 효과적인 감독 체계

-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감독 체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당사국이 효력을 부여한 본 협약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3 당사국이 그러한 감독 체계를 두 개 이상 마련한 경우,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대로 감독 체계 간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4 당사국이 기존의 인권 기구와 다른 감독 체계를 마련한 경우,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감독 체계와 기존의 국내 인권 기구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장 - 최종 조항

제27조 - 협약의 효력

- 1 둘 이상의 당사국이 본 협약에서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이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조약을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 관계를 그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집니다. 다만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상호적 관계에 따라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침범함이 없이, 또한 다른 당사국에 대한 완전한 적용을 침범함이 없이, 본 협약의 범위에 속한 문제를 규율하는 유럽연합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규칙에 구속되는 한 다른 당사국에도 이 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8조 - 개정

- 1 본 협약의 개정은 당사국,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또는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될 수 있습니다.
- 2 모든 개정 제안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당사국들에 전달합니다.
- 3 당사국 또는 각료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개정안은 당사국 총회에 전달되며, 당사국 총회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각료위원회는 제안된 개정안과 당사국 총회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에 따라 각료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수정안의 문구는 당사국들의 수락을 받기 위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 6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개정안은 모든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그 수락을 통지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됩니다.

제29조 - 분쟁 해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제23조 제2항 e호에 규정된 당사국 총회를 비롯하여 협상 또는 기타 당사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의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30조 - 서명 및 발효

- 1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본 협약의 성안에 참여한 비회원국 및 유럽연합에 서명을 개방합니다.
- 2 본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합니다.
- 3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3개국 이상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이 제2항에 따라 본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발효합니다.
- 4 이후 본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한 서명국에 대하여, 본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발효됩니다.

제31조 - 가입

- 1 본 협약의 발효 후,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본 협약의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후, 유럽평의회 규약 제20.d조에 규정된 과반수 결정과 각료위원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당사국 대표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 본 협약의 성안에 참여하지 않은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이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 2 모든 가입국에 대하여,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가입에 대한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발효됩니다.

제32조 - 지역 적용

- 1 국가 또는 유럽연합은 서명 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에 대한 문서를 기탁할 때 본 협약이 적용될 영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국은 추후에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신고를 통해 신고에 명시된 다른 영토로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토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사무총장이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발효됩니다.

- 3 앞의 두 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신고는 해당 신고에 명시된 지역과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사무총장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3조 - 연방 조항

- 1 연방 국가는 본 협약이 연방 국가의 중앙정부에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중앙정부와 각 주 또는 기타 유사한 영토 기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부담을 유보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2 연방의 헌법 체계에 의해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각 주 또는 기타 유사한 영토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는 본 협약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해당 주의 관할 당국에 호의적인 취지로 해당 조항을 통지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제34조 - 유보

- 1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에 대한 문서를 기탁할 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제33조 1항에 규정된 유보를 이용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른 유보는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 폐기

- 1 당사국은 언제든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2 이러한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6조 - 통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본 협약의 성안에 참여한 비회원국, 유럽연합, 모든 서명국, 체약국, 당사국 및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기타 국가에 다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a 모든 서명국
- b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 c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
- d 제28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개정안 및 해당 개정안의 발효일
- e 제3조 제1항 b호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신고
- f 제34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유보 및 유보 철회

- g 제35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폐기
- h 본 협약과 관련된 기타 모든 행위, 신고, 통지 또는 전달

아래 서명인은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9월 5일 빌뉴스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체결되어, 두 본문은 동일한 진본이며, 단일 사본으로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의 각 회원국, 본 협약의 성안에 참여한 비회원국, 유럽연합 및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된 모든 국가에 인증된 사본을 송부합니다.